

『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복자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(안 제7조제1항)
 - 현행 결산검사 사항에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은 추가하고,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은 삭제하며,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(안 제7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